과학기술정보통신부
Ministry of Science and ICT
www.msit.go.kr

보도자료

4차산업혁명의 큰길로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

한국판뉴딜 디지털뉴딜

보도일시	2020. 12. 31.(목) 조간(온라인 12. 30. 12:00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20. 12. 30.(수) 09:00	담당부서	소프트웨어산업과
담당과장	박준국(044-202-6330)	담 당 자	이태호 사무관(044-202-6331)

과기정통부, 「소프트웨어(SW)분야 표준계약서」 개발 및 활용 추진

- 소프트웨어 종사자용(2종) 및 소프트웨어 사업용(4종) 표준계약서 총 6종 개발 -

- 표준계약서 활용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기술평가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마련 -

-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법정 표준계약서 최초 도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환경 개선 기대 -

□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**(장관 최기영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공정한 소프트웨어(이하, 'SW')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**표준계약서**(이하 'SW표준계약서') **6종을 개발**하여, '20.12.31.(목)부터 SW산업현장에 **배포·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○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, 관련 법률(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)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**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**를 위해 마련하였다.

○ 이번 SW표준계약서는 **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**될 수 있도록 **관련 업계**(발주자, SW사업자) 및 **법률·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**하였고, **관련 정부부처**(행안부, 문체부, 공정위, 고용부) **등과 협의**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.

□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▲**SW종사자**(프리랜서)**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**과 ▲**SW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**이다.

□ 먼저 **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*는** ①**SW종사자**(기간제, 단시간) **표준근로계약서**(이하, 'SW표준근로계약서'), ②**SW종사자**(용역) **표준도급계약서**(이하, SW표준도급계약서') 등 **2종**이며, 이는 SW 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(41.4%) 또는 도급계약(42.0%)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.

* SW종사자 표준계약서는 과기정통부·서울고용청이 협력하여 지난 5월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바 있으며, SW진흥법 시행에 따라 동 표준계약서를 법정(法定) 표준계약서로 확정하려는 것임

○ **SW표준근로계약서**는 SW프리랜서가 **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**하여 사용자로부터 **지휘·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**되었다.

- 주요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**업무내용, 근로시간,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**하도록 하고, **휴가규정을 명확히** 하도록 하여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. 또한, **임금액·지급일자·지급방법 등을 명시**하고, 사용자에게 **근로계약서 작성·교부의무를 부여**하였다.

○ **SW표준도급계약서**는 SW프리랜서가 **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**에 대해 **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**하는 **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**되었다.

※ 다만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SW프리랜서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 'SW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'를 활용하여야 함

-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**도급업무의 범위, 보수금액·지급방법 등을 명시**하도록 하고, **도급 성과물**에 대해서는 **원칙적으로 도급·수급인이 공동 소유**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, **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**하도록 하였다.

□ 다음으로 **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**는 ③**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**, ④**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**, ⑤**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**, ⑥**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** 등 **4종**이며,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**민간발주자와 SW 사업자간 계약에 활용***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.

* ▲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(또는 지방계약법)상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, ▲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인 경우에는 공정위 '표준하도급계약서'가 적용됨

○ 주요 내용으로 발주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**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**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, **계약내용과 과업 변경은 상호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**토록 하였다.

○ 또한, 계약서에 **계약금액, 대금의 지급액, 지급시기 등을 명시**하도록 하고, 발주자가 **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**에는 **공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 중지**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이 경우 **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**토록 하였다.

○ 아울러, **계약해지 사유, 손해배상,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**하여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과기정통부는 **SW표준계약서 활용·확산**을 위해 **관련 고시를 개정**하여, **공공SW사업**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,

○ ▲입찰과정에서 **기술평가 가점을 부여**하고(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(고시) 제4조 제4항 제6호), ▲하도급계약 승인시 **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**할 수 있도록 하는 등(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(고시) 제21조 및 별표3) **유인체계를 정비**하였다.

□ **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**은 "SW진흥법에 근거한 **법정 SW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도입**되면서, SW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**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**할 수 있게 되었다"면서,

ㅇ "앞으로 **SW표준계약서의 보급·확산**을 통해서 SW종사자와 SW기업들에게 공정하고,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**공공·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**하겠다"고 밝혔다.

□ SW표준계약서 전문은 12월 31일부터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W관련 협·단체 홈페이지***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.

*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, 정보통신산업진흥원(www.nipa.kr), SW산업정보시스템(www.swit.or.kr),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(www.spri.go.kr), 한국SW산업협회(www.sw.or.kr)

붙임 1. SW종사자(기간제, 단시간) 표준계약서(2종)
2. SW사업 표준도급계약서(4종). 끝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태호 사무관(☎ 044-202-63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